

사적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 차>	
I. 서론	IV.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
II.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우리나라 사적연금소득 과세체계
1.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개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이론적 모형	V. 결론
III. 주요 선진국의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	참고문헌
1. 퇴직연금 과세방안	
2. 개인연금 과세방안	

박춘래*, 김석현**, 이은호***

A Study on Future Directions to Improve the Private Pension Income Taxation

Park, Chun Rae · Kim, Suk Hyun · Lee, Eun Ho

Abstract

When Korea enters an aging society recently, we are greatly concerned about pension income and it will be placed a great deal of weight in future. The pension income is divided into a public pension and a private pension. The public pension is divided into a national pension and a special occupation pension. The private pension is divided into a corporate pension and a personal pension.

This research is not only to analyze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the private pension income taxation but to raise its problems and improvements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nalytical results o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동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세무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 세무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First, when the new personal pension is cancelled, a contract offender will be imposed heavily a tax burden. So, an alternative plan should be provided. Second, the deduction imbalance of the new personal pension between the old personal pension should be resolved. Third, the following reform plans have to be prepared in future to promote the corporate pension taxation substantially. Fourth, tax unfairness between the public pension and the private pension,

Finally, the tax incentives for the private pension income should be restructured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ther pension incomes and the division the role between the public pension and the private pension.

I. 서론

우리나라도 의료기술의 발달, 개인들의 건강증진 노력 등으로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노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경제적인 준비가 절실히 되고 이에 따라 저축, 보험, 퇴직금, 연금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장기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향후 연금소득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제도는 노령·질병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소득상실에 대비하여 경제력이 있을 때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일정기간 적립하여 대체소득원은 마련하고 일정한 조건이나 연령에 해당하면 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형태로 소득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1938년 도입되었고,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군인연금으로 구성된 특수직역연금은 1960년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저부담-고급여라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재정의 불안정성을 가져왔으며 국민연금은 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포착의 차이에서 기인한 연금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뉘어진다.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고 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하다보니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실질적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립이 보편화되지 않아 급여지급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1994년 도입된 이래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연금의 역할분담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연금이 여타 저축수단과 다른 점은 여타 저축수단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친 저축수단이며 세제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연금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무엇보다 세제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일 것이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세제지원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따라서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수단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연금과세체

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연금과세 제도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비록 현재 연금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국민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후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향후 연금소득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연금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제도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퇴직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위해서라도 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노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연금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소득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까지 비과세 되었던 연금소득을 2001년부터 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각종 연금의 기여금불입액에 대하여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함으로써 에너지 세제개편 등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지는 대기동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노동부 보도자료(2006.9.14)에 따르면 2006년 8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11,797개소, 가입자는 107,960명, 적립금은 2,161억원을 기록하는 등 아직 퇴직연금의 도입이 활발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기동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내실을 갖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정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퇴직연금 관련 세제 정립이 선행요건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본 연구는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이론적 기본구조, 기업연금·개인연금에 대한 과세제도에 국제적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소득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사적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법률, 법규, 연구문헌, 정기간행물, 논문 등에 대한 이론연구로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사적연금세제의 과세방안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을 고찰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적연금세제의 과세방안을 정리·비교 검토한 후 현재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과세방안을 살펴보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연금소득 과세제도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을 살펴본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개황

연금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장기적 안정성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바람직한 연금세제의 형태를 고려할 경우 다각적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연금세제를 검토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세 가지의 범주로 좁혀서 생각하고자 한다.

첫째, 연금세제를 검토할 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각각 어떤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가를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연금세제는 각출·적립금의 운용·급부의 3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과세원칙을 수립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연금세제의 과세형태로 「포괄적 소득과세」라는 방식을 수용하여 연금급부를 소득과세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다른 시점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연금소득 과세원칙을 정립할 때 지급능력기준(ability-to-pay)과 최저생계비기준(standard-of-living)을 고려하여 정립하여야 한다.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최저생계비를 위한 수단인지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이 선행되고 난 후 소득개념에 부합하는 급부를 과세대상(tax-base)에 포함하되 부담능력인 지급능력기준과 생활능력인 최저생계비기준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연금세제를 검토 시 국가경제가 급속히 휩쓸리고 있는 국제화라는 시류에 부합한 세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연금이라는 제도도 국제화에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연금세제 면에서 볼 때 완전히 독자적인 연금세제를 구축하는 국제화의 조류를 무시한 과세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세계화의 추세에 병행하여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과세 제도를 정립하여야 한다. 즉, 연금세제는 OECD나 EU모델처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세제취급이 되어야 한다.

셋째, 연금세제 도입 시 연금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재원조달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재원조달방식을 적립법식으로 할 것인가 부과법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적연금에만 해당되는 국한된 면이 있으므로 연금세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고자 할 때는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되어 각각의 재원조달방식의 논의는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2.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이론적 모형

가. 연금소득과세의 단계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① 연금의 적립단계로서 기여금, 보험료 및 부담금의 불입단계(불입단계) ② 불입된 기금을 투자·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수익발생단계) ③ 연금을 수역하여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연금수령단계)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불입단계는 장래 연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나 회사 등이 기여금, 보험료 및 부담금 등의 명칭으로 불입하여 적립해 나가는 단계로서 각출금이 연금 기금으로 투입되는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 관련된 세제를 '입구과세제도'라고 한다. 수익발생 단계는 연금기금에 의해서 조성된 신탁재산 등을 운용하여 이자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한편, 연금수령단계는 연금소득이 발생하므로 이 단계의 세금을 '출구과세제도'라고 한다.

나. 연금소득 과세방식의 종류

연금소득 과세방식의 종류에 대해 논하기 전에 연금소득 과세방식의 중요성을 들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연금제도의 상대적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활력 있는 장수사회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역할이 중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연금급부가 노후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연금세제의 과세시점 또한 각출·운용·급부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합한 세제의 취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연금세제는 라이프타임(life-time)의 관점에서 볼 때 장기를 요하게 되므로 연금세제를 설계 할 때에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각출시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와 급부시 급부를 수령하는 자가 다르게 되어 각각의 부담능력과 최저생계비의 생활능력을 고려한 세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연금제도는 과세대상으로서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금세제의 도입·설계시 이론적 기초를 중시하여야만 한다.

연금소득 과세방식은 포괄적 소득과세와 지출세로 구분할 수 있다. 포괄적 소득과세는 매 단계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을 담세력의 지표로 보되, 규칙적

인 것은 물론 일시적인 소득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과세방식이다. 이 방식을 연금소득 과세방식으로 채택할 때에는 소득할생 단계인 각출단계에서 과세대상에 포함된 소득이 다시 급부단계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위험성이 있어 과세시기를 어느 때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논할 때에는 포괄적 소득과세 내지 지출세적인 측면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소득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연금소득 과세방식에 관한 여러 보고서 가운데 연금세제의 개혁방향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연금소득의 과세방식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는 연금소득 과세제도를 고찰함에 있어서 1966년의 『카터 보고서(Carter Committee)』와 1970년의 미국 재무성 보고서인 『블루프린트 보고서(Blueprint Committee)』 또는 영국의 『미드 보고서(Meade Committee)』를 토대로 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한 세가지 범주 가운데 첫 번째 범주인 연금소득 과세원칙의 정립과 각 보고서의 각출·운용·급부 단계별 세제취급을 파악해 보고 주요국의 연금세제취급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미드 보고서

미드 보고서¹⁾은 전통적 과세방식으로서 공평한 소득과세를 설계하기 위한 이론적 지침으로서 전통적으로 포괄적 소득과세를 중요시 해온 Haig-Simons의 고찰방법을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일정기간에 있어서 소비액과 순자산가치의 증가액의 합'을 소득으로 보고, 소비 또는 순자산가치의 증가에 공헌하는 모든 요인을 소득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다. 미드 보고서는 소득개념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장래의 연금수급권을 일종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당해 기간의 연금자산의 증가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자산의 매년 가치증가액을 근로기간의 소득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연금수급권은 수익권자에게 있어서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장래의 불확정적인 요인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되거나 감소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매년의 연금자산의 가치증가액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미드 보고서』는 포괄적 소득과세의 원칙에 비교적 충실한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 과세취급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Meade Committee』,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1978 pp. 142-145.

- ㉠ 사업주가 부담한 각출금은 그 사용자의 손금에 산입하되,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변형으로 보아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 근로자 본인이 각출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 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은 원칙적으로 발생시에 연금수급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으로 본다.
- ㉣ 각출 및 적립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금급부에 대하여는 신규운용수익부분을 제외하고는 과세되지 않는다.

(2) 블루프린트 보고서

블루프린트 보고서²⁾는 미드 보고서의 세제취급 중에서 사업주 각출을 급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금 보험료 각출은 소위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저축에 대하여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과 각출시 과세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남부하기에 적합한 현금수입이 없다는 점은 지불능력기준(ability-to-pay)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연금수급권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확정하다라고 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이 내포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드 보고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 재무성은 『근본적 세제개혁을 위한 청사진(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실제적인 타협안으로 다음과 같은 연금세제 취조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출액은 사업주의 사업소득 산정상 경비로서 인정되지만 종업원을 위하여 대신 부담한 각출액은 피용자의 과세대상소득에 산입하지 않는다.
- ㉡ 피용자 본인의 각출은 과세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 ㉢ 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은 피용자에게 배분이 가능한 경우는 피용자소득으로서 과세하고, 배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 영역으로 과세한다.
- ㉣ 연금급부는 전액을 피용자의 소득으로서 간주하여 과세대상에 산입한다.

(3) 카터 보고서

연금급부 과세시 담세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 지표로서 소득과세를 취할 때에는 단순히 소득을 포괄적 소득과세 대상으로만 규

2) 『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 Bradford, 2nd edition, 1984, pp. 52-54.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기평균 소득수준 또한 중요시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평균과세가 기술적으로 번잡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 장기평균과세를 단념하고 그 대신 개인의 생애소득의 평균화 행동을 세제상 인정하는 생애소득 평균화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한 과세방법은 앞서 논한 두 가지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세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카터 방식이다. 이 보고서는 사업주각출·피용자각출·연금적립금 운용수익 모두 과세를 이연하고, 연금급부 단계에서 급부의 전액을 수급자의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카터 보고서³⁾는 위의 두 가지 보고서와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의 『카터 보고서』는 퇴직 후의 소득유지계획을 촉진한다는 사회정책적 권장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등록퇴직소득플랜(registered retirement income plan)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각출 및 운용에 대한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은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대한 우대조치를 취하여 주는 대신에 그 적용요건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약과 철저한 감독기준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논의되는 대부분은 이 방식 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 사용자가 각출한 부담금은 그 사용자의 손금에 산입하지만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 ㉡ 근로자 본인이 각출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 ㉢ 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 ㉣ 연금급부는 전액을 수급자의 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한다.

연금소득 과세방식 중 정통파방식인 미드 방식, 블루프린트 방식, 카터 방식의 각출·운용·급부 단계별 세제취급은 <표 II-1>와 같다.⁴⁾

3)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Vol 3, Taxation On Income』, 1966, pp. 421-427.

4) 김수성, 연금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2000), p. 14를 일부 수정 인용함.

<표 II-1> 단계별 연금소득 과세방식

단계별 취급		Meads Committee	Blueprint Committee	Carter Committee
붙임 단계	사업주각출	· 경비로서 공제 · 급여로 간주하여 과세	· 경비로서 공제 · 급여로 간주하지 않음	· 경비로서 공제 · 급여로 간주하지 않음
	피용자각출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소득공제	소득공제
수익발생단계		개인베이스 과세	과세	비과세
연금수령단계		비과세	전액과세	전액과세

한편, 연금의 종류별 각출·급여에 대해 과세·비과세 여부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을 보면 <표 II-2>와 같다.⁵⁾

<표 II-2> 주요국의 연금소득 종류별 과세현황

구분	공적연금		기업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각출시	급여시	각출시	급여시	각출시	급여시
미국	T	T	F	T	F	T
영국	T	T	F	T	F	T
일본	F	T	F	T	F	T
한국	T	F	F	T	F	F

주 : T는 소득세 과세, F는 소득공제나 비과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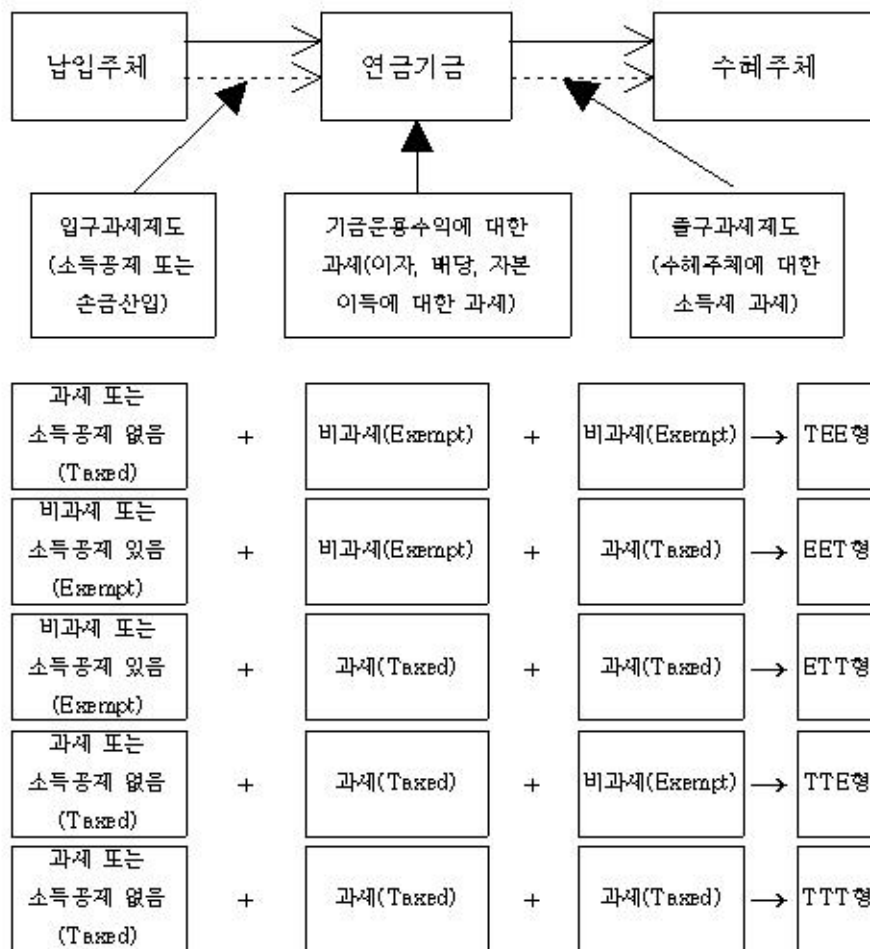
연금제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지금까지의 소득과세는 일정기간의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소득과세가 주축을 이루었는데 반하여 향후에는 생애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지출세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연금소득 과세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출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의 연금과세의 방향은 비교적 명쾌하다고 할 수 있다.

5) 국민연금센터,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Ⅲ(1997), 일부 수정하여 간접 인용함.

다. 연금과세체계와 과세유형

<그림 II-1>처럼 연금과세체계와 과세유형은 각 단계의 과세·비과세 여부에 따라 TEE형, EET형, ETT형, TTE형, TTT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⁶⁾

<그림 II-1> 연금과세체계에 따른 과세유형



6) 최경식,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과 향후 과세, 사회과학논집 제6호(2002), pp. 341-343을 수정 인용함.

이러한 과세유형은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실정에 맞게 선택·운용되어야 하는데 다음 <표 II-3>에서 보듯이 선진국들 중 많은 나라가 EET형을 채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⁷⁾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계와 OECD의 권고에 따라 2000년 세법 개정이전 TEE형으로부터 재정이후(현행)는 EET형으로 전환되었다.

<표 II-3> 주요국의 연금소득 과세유형

과세유형	해 당 국 가
EET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스위스, 독일, 한국
TTE	뉴질랜드
ETT	스웨덴, 일본
TTT	오스트레일리아

7) 전춘옥외 2인, 고용관행의 변화에 따른 퇴직급여 회계와 세무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8).

Ⅲ. 주요 선진국의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

본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장에서 살펴볼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 포함된다. 이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경험하였으며, 각종 사적연금소득과 관련한 과세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퇴직연금 과세방안

가. 미국

미국에서의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1950년대이다. 이 시기는 경기후퇴에 따라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기업연금을 획득하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pension drive)을 벌였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이 광범하게 보급되면서 종업원의 수급권의 보호나 기업도산 등에 따른 연금제도의 폐지가 빈발하면서 수급권의 확고한 보장이 필요성에서 종업원퇴직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이 제정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부담이 심각하게 되면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늦추는 등의 실질적 연금 삭감이 행해졌으나 이와는 반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우대조치를 통하여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시켜 왔다. 이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그 급부수준을 공적연금급부와 통합하여 일정수준을 맞춰주는 조정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엄격한 세제적격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와 기업에게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적격연금(qualified pension)을 도입했다. 연방차원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연금의 제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비적격연금(unqualified pension)에 대해서는 기업이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은 부여하지 않는다. 퇴직연금을 규제하는 기본 틀은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IRC)과 ERISA이다. ERISA는 수급권의 보장, IRC의 세제적격규정 및 연금제도의 국가적 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퇴직연금 비적용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하여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와 Keogh Plan을 운영하며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IRC는 기금각출과 급여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ERISA는 확정급부방식의 적립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IRC의 세제적격기준은 매우 많은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잡하나 기본조건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각출금이나 급부금의 금액과 가입에 차별적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고액급여종업원을 위한 조세회피용 연금계획(top-heavy plans)에는 추가적인 적격요건이 요구된다. 내국세입법 제401조는 적격기종의 연금, 이익분배제도 또는 주식보너스제도의 조세우대취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제사의 우대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과세이연 등이 포함된다(IRC 401, 401(a), 402(a),(c),(d), 403(a), 404조).

세제적격기준의 중요 내용은 ① 가입과 적용범위 ② 수급권부여(vesting) ③ 가입자의 각출금 ④ 각출금과 급부액의 제한 ⑤ 급여한도 ⑥ 합동 및 유족연금과 퇴직전 유족연금의 조건 ⑦ 급부의 개시 ⑧ 급부액의 지급기간 ⑨ 양도금지조항(anti-assignment provision) ⑩ 고액급여종업원을 위한 조세회피용 연금계획(top-heavy plans) ⑪ 최저적립기준 ⑫ 금지되는 거래(prohibited transactions) ⑬ 세법상의 신고 등이다. 한편 세제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ERISA에서 규정한 적격요건도 만족해야 한다.⁸⁾

나. 영국

영국의 퇴직연금제도는 국민 누구에게나 제1단계의 기초연금과 제2단계의 선택적인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비례연금, 적용제외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제2단계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고 있다. 기업연금만의 강제가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기업연금의 설치여부는 사업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적용제외기업연금이 실시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소득비례연금과 개인연금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기업연금제도는 소득비례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소득비례연금부분을 대행하는 적용제외제도(contract-out)가 설치되어 현재는 기업연금 가입자중 약 9할이 적용제외를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기업연금(직역연금)이 담당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공적연금의 강제적 적용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이다.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도입은 1970년 소득·법인세법에서 지급형태가 연금일 경우에만 세

8) 방하남,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1997), pp. 57-64.

제혜택을 주었으며⁹⁾ 이를 위해서는 소득·법인세법의 적격요건을 만족시키고 내국세입청의 퇴직연금국(Superannuation Funds Offices: SFO)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적격요건은 1987년 금융법에서 개정되고 다시 1988년 소득·법인세법으로 통합되게 된다. 이후 1989년 금융법에 의하여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사회보장법 및 사회보장연금법등의 제도개선이 있었음에도 그 기존 체계가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70년의 금융법(Finance Act) 제19조에서는 적격연금(approved scheme)을, 그리고 제20조에서는 제19조의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의 퇴직연금국이 재량권을 발휘하여 적격으로 보는 인정조건을 규정했다(이 법은 1988년 소득·법인세법으로 대체, 폐지됨). 당시의 소득·법인세법(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제208조와 제222조는 금융법 제19조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급목적, 사용자의 각출, 기금납입의 계속성, 근로자 각출의 한도, 연금지급액의 한도액 및 양도의 금지 등이다.¹⁰⁾

이러한 적격기준이 현실여건과 괴리가 있자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70년 금융법상의 재량권에 의하여 퇴직연금국이 적격제도(approved scheme)와 비과세적격제도(exempt approved scheme)라는 2가지 형태의 적격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전자는 연금급부를 목적으로 한 기업각출금의 비과세를 후자는 원칙적으로 취소불능신탁으로 설립되는 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기업각출금은 물론 종업원 각출금과 운용수익까지 비과세되는 형태이다.

다. 일본

일본의 연금역사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지만 민간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는 1939년 선원보험법을 필두로 1941년의 근로자 연금보험법(1944년 후생연금법이 됨)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전통적인 퇴직금제도가 유지되어 왔으나 경기호황기인 50년대 후반에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기업에게 퇴직금지급에 대한 부담이 인식되고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하면서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제단체와 보험기관 등이 기업각출금에 대한 손금산입과 종업원각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연금급부의 비과세 취급 등 세제상 우대조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1962년 세제적격연금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세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생명보험회사나 신탁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사외에 적립한 기업연금에 대하여 세제상 우대조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9) 고광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한국증권경제연구원(1997), p. 81.

10) 김인기, 기업연금제도와 우리나라의 도입방안, 대한투자신탁 경제연구소(1991), p. 94.

다. 그 구체적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모두 12개의 요건이다. 그 주된 내용은 사외적립, 퇴직연금의 지급목적일 것, 근로자에게만 수취권이 있을 것,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에게 반환할 수 없게 할 것, 적절한 연금수리계산에 따라야하며 임의적 조정이 있을 수 없도록 할 것 등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후생연금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는 퇴직금과 후생연금의 중복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가 강해 조정연금이라는 이름으로 1966년에 실시된 것이다. 이 제도는 후생연금 급부의 일부 즉 후생연금의 급부 중 저축적 성격이 강한 노령연금의 보수비례부분의 급부(신제도상 노령후연금)를 대행함과 동시에 대행급부의 30%이상을 기업이 임의로 독자적 부가급부를 주는 기업연금제도이다. 최근 크게 신장하고 있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적격연금의 기준에 부합되면서 후생연금보험법상의 후생연금기금으로 인정되어야 세제혜택이 적용된다.¹¹⁾

<표 Ⅲ-1>는 주요 선진국의 기업연금 제도를 요약하고 있다.

<표 Ⅲ-1> 기업연금의 국제비교

	제 도	내 용 (세 제)			
		각 륜 시		급 부 시	
		고용주각출금	종업원각출금	연 금	일 시 금
미 국	확정급부형	일정한도까지 순금산입	소득공제 없음	소득세율로 과세 : 본인 각출분은 제외 연간 \$15만 초과급부는 15% 과세 *유족연금 :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과세대상	
	확정각출형	15%까지 순금산입			
	복 합 형				
영 국	지역연금	전액 순금산입. 단, 年\$71,400초과 각 출금은 순금산입되 지 않음	각출한도액 (£10,710)까지 전액 소득공제	전액과세	전액비과세(가입연도에 따라 비과세, 일시금은 다름)
일 본	격격퇴직연금	전액순금산입	생명보험료 공제(¥5만까지)	감소특과세.	퇴직소득과세
	후생연금기금	전액순금산입	전액 사회보험료 공제	감소특과세.	퇴직소득과세

자료 : 한도숙 외,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5.

11) 후생연금보험법 제130조의 2, 159조의 2 등.

2. 개인연금 과세방안

가. 미국

(1) 자영업자 - Keogh plan

자영업자의 경우 SIMPLE plan(saving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이나 H.R. 10 (Keogh)plan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영업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기업연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들이 같이 적용된다. Keogh plan은 뮤추얼펀드나 부동산 지분, CD, 증권 등 다양한 형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S&L 등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근로자로서 기업연금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도 자영업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해서는 Keogh plan을 개설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연간 \$30,000 또는 획득소득의 25%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확정각출 Keogh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윤공유형태인 경우 15%의 비용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여기서 획득소득은 총소득에서 관련공제액을 제한 순소득의 개념으로서 Keogh에 기여한 금액도 공제에 포함된다. 확정급부형의 경우 연간 급부한도는 \$130,000(1998년)이나 근로기간 중 3년간의 최고급여액 평균의 100%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근로자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데, 기업연금에 비해서 보다 엄격한 상위집중기금(top-heavy plan)원칙이 적용된다.

(2) 개인퇴직연금

(가) 일반적 사항

다른 적격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개인퇴직연금(IRA)을 설치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기여한도액은 \$2,000 (부부인 경우 \$4,000)과 급여액의 100% 중 작은 금액이다. 다른 적격연금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우 일정한 조정총소득 구간에서는 그 한도가 비례적으로 감액 (phase-out)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각 개인들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여를 별도로 계좌에 할 수 있는데, 그 한도는 앞에서 제시한 소득공제 대상 기여액과 같다. 이 계좌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시까지 과세가 유예되는데, 지급시에는 원금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진다. 각 개인들은 공제대상 기여액을 공제 비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과세소득이 없는 개인의 경우 후자가 유리하기 때문

이다.

IRA에 대한 기여시기는 세금신고 이전까지로서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기여할 수 있다. IRA에 대한 과다기여에 대해서는 6%의 벌칙성 조세가 부과되는데 환불이나 다음연도의 과소기여 등을 통해서 과다분이 해소될 때까지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IRA에 대한 기여금액이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로부터의 인출금액은 전액 과세되며, 일시인출에 대한 5년 또는 10년 평균화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59.5세 이전의 인출에 대해서도 10%의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조정순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나 적격교육비, 적격 최초주택구입 (\$10,000 한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에 대해서는 벌칙성 조세가 면제된다. 또한 12주 연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자신이나 가족의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한 인출에 대해서도 벌칙성 조세가 면제된다.

(나) Roth IRA

1998년부터 Roth IRA라는 새로운 형태의 IRA가 도입되었다. 이는 기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그로부터의 인출액은 면세되는 제도로써, 전통적인 IRA가 현재의 기여액에 대해 소득공제하고 미래 인출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Roth IRA로부터의 인출이 면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5년의 보유기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건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① 인출이 납세자가 59.5세에 도달하거나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 ② 가입자의 사망에 따라 수익자 또는 상속재산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 ③ 가입자가 장애인이 된 경우.
- ④ 인출액이 적격의 최초 주택구입에 사용된 경우.

기여액의 한도는 소득에 따라 감액되는데, 독신자의 경우 \$95,000, 공동신고 기혼자에 대해서는 \$150,000의 소득부터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감액범위는 전자는 \$15,000, 후자는 \$10,000이 적용된다.

(다) 교육 IRA

1998년부터 등록금, 책값 등 적격고등교육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IRA 인출은 비과세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숙식비용도 전업학생 학점의 50%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이러한 교육 IRA의 수익자는 18세 미만에 국한하며, 기여액은 연간 \$500을 한도로 인정되

는데, 이 한도는 Roth IRA와 같은 내용에 따라 감액된다. 한편 인출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여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라)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SEP)

21세 이상이고 최소한 \$400이상 (1998년)의 급여를 받으며, 직전 5년중 최소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위해 사용자는 연간 \$30,000과 근로자의 소득 (1998년의 경우 \$160,000 한도)의 15%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그 개별직원에게 대해서 IRA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액에 대해서는 \$10,000을 한도로 총소득에서 공제된다.

나. 영국

(1) 연금제도

종래 영국에서는 개인연금이라 하면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SERA)을 가리키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광범위한 의미로서는 기업연금에 속하고 있는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관리자를 위한 연금(Executive Pension)' 또는 '회사지배인원을 위한 개인연금'이라 지칭하는 것이나 개인이 임의로 생명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연금상품을 구입한다고 하는 「임의 개인연금」도 광의의 개인연금에 포함되고 있다. 특히 SERA는 자영업자 및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소득의 제공을 목적으로 1956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종류의 개인연금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후 연금개혁으로 1988년 7월 1일부터 사적연금을 더욱 확충한다는 관점에서 직역연금에 미가입한 종업원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개인연금」이 탄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SERA는 1988년 6월 30일에 폐지되어 신규계약은 없이 기존계약분에 대해서만 존속하고 있다.

(2) 관련세제

개인연금의 계약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영업자
- ② 직역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종업원 및 자영업자일 것.
- ③ 연금지급개시연령이 50~70세일 것.
- ④ 부금기준방식일 것.

⑤ 계약자의 사후, 그 배우자에게도 반액이 지급되는 것일 것.

1989년 경우 35세 이하인 납세자는 순연간소득(Net Relevant Earnings)의 17.5%를 한도로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소득의 한도금액은 87,600파운드이다. 납부한 연금각출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 또는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이월공제는 과세연도말 이후 1월 31일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전년도에 공제가 가능한 소득이 없으면 2년 전기이월할 수 있다. 차기이월의 경우는 6년까지 가능하다. 고령자 우대조치에 의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며 연령별 공제한도액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개인연금의 연령별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액

(단위 : 파운드, %)

구 분	소득공제율	공제한도액
35세 이하	17.5	15,330
36~45세	20.0	17,520
46~50세	25.0	21,900
51~55세	30.0	26,280
56~60세	35.0	30,660
61세이상	40.0	35,040

자료 : OCH, British Master Tax Guide, 1998.

급부액에 대해서는 통상소득으로 인정하여 전액 과세되며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비과세일시금은 적립금의 25% 또는 15파운드를 한도로 하고 있다.

1988년 7월부터 종래의 퇴직연금계약(Retirement Annuity Contracts: RAC)에 대신해서 개인연금계약(Personal Pension Plan: PPP)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퇴직연금계약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고용주에 의한 각출이 가능.
- ② 비과세 일시금을 연금(원금)의 25%로 동일.
- ③ 공적소득비례연금(State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 SERPS)의 적용제외 인정.
- ④ 50세부터 임의지급가능(퇴직연금계약은 60세 이전 지급불가).
- ⑤ 종래 생명보험 독점체계가 무너지고 취급금융기관으로 은행, 투자신탁(연금형),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 우애조합 등의 참여인정.

다. 일본

(1) 개요

일본은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60%~75% 이상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자조노력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크게 저축형과 보험형으로 나뉘어지는 바 저축형은 예금·대부신탁·채권 등에서 운용한 저축의 이자와 원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방식은 예·적금의 경우와 같다. 이하에서는 보험형인 개인연금과 재형연금저축의 과세방식을 설명한다.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연금에는 우정성이 운영하고 있는 우편연금과 민간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영 개인연금이 있다. 민영 개인연금에는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은행·증권회사의 개인연금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제연금이 있다. 또한 개인연금은 저축형 개인연금과 보험형 개인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형」 개인연금과 은행·신탁 등의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연금지급 형태의 「저축형」 개인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개인연금과세

개인연금의 세제의 기본적인 방식은 「각출시 비과세, 급부시 과세」를 따른다. 개인연금은 자영업자층의 자조노력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기업연금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생명보험이나 우체국이 판매하는 개인연금보험은 일정금액을 한도로 하는 생명보험료공제가 적용되어, 세제상 우대조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연금이 부재한 영세기업의 종업원등도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개인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연금보험 및 우편연금의 과세상의 취급은 각출시에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적립금운용수입에 있어서 개인베이스의 과세는 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연금지급부는 잡소득으로서 과세되며, 「노령자연금특별공제」와 「급여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각출시의 연금세제

일정요건¹²⁾을 충족하는 특정한 개인연금보험에 대하여 최고 연5만엔 개인연금보험료공제

가 인정된다. 「생보형」 개인연금 및 「생보형」 비적격퇴직연금은 개인연금보험료공제대상에 속하며, 「저축형」 개인연금 · 근로자 재형연금 및 「생보형」 이외의 비적격퇴직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용인이 부담한 각출금은 연금보험계약 혹은 신탁계약 혹은 연금신탁계약을 불문하고 생명보험료공제대상이 된다. 보험료 공제에는 「일반생명보험료공제」와 「개인연금보험료공제」가 있다.¹³⁾

일반생명보험료 공제는 생명보험의 만기보험금 수취인을 본인 또는 배우자 혹은 기타 친족으로 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그해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소득세에 대해서는 최고 5만엔을, 주민세에 대해서는 최고 3.5만엔을 한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보험기간이 5년 미만인 저축보험은 공제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개인연금보험료공제¹⁴⁾는 1984년도 세법개정에 의해 개인연금보험에 대하여 개인연금 보험료 공제가 도입된 것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은 1990년부터 인상되어 일반 생명보험과 동일하다. 개인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의 범위로는 「개인연금보험료 세제적격특약」을 부가한 개인연금보험을 말하며, 개인연금보험에서 「개인연금보험료 세제적격특약¹⁵⁾」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생명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된다.

- 12)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60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 급여를 지급할 것이 요건이다.
13) 일본 소득세법 76조 ①, ③항.
14) 생명보험료 공제액과 개인연금보험료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사용인이 부담한 과금등에 있어서는 연금보험계약 혹은 신탁계약 혹은 연금신탁계약을 불문하고 생명보험료공제대상이 된다.(소법 76 ③) 적격퇴직연금계약의 사용인부담금은 그밖의 생명보험료와 합하여 다음의 계산기간에 의해 계산된 액에서 소득공제된다.(소법 76①)

【개인연금보험료공제액】

(단위 : 엔)

소득세		주민세	
지불보험료	공제액	지불보험료	공제액
25,000이하	지불보험료(P)전액	25,000이하	지불보험료(P)전액
25,000-50,000	$P \times 1/2 + 12,500$	25,000-40,000	$P \times 1/2 + 7,500$
50,001-100,000	$P \times 1/4 + 25,000$	40,001-70,000	$P \times 1/4 + 17,500$
100,001-	50,000	70,001-	35,000

- 15) ① 연금수취인이 계약자 또는 배우자중 한사람일 것.
② 연금수취인은 피보험자와 동일인일 것.
③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일시납은 불가).
④ 확정연금인 경우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연금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요건을 요함.

(4) 운용수익의 과세

적립금 운용수익에 대하여는 급부시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생보형」 개인연금 운용수익은 예정이율분은 최종 연금수급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과세하고, 예정이율을 상회하는 부분의 배당에 대하여는 정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적립하여 두고,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배당을 현금으로 수취한 때는 지불보험료를 차감하고 연금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한다¹⁶⁾. 「저축형」 개인연금 운용수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되지만 그 과세시기의 실무취급은 발생시가 아닌 수취시에 과세하게 된다.

(5) 급부시의 과세

연금의 종류는 확정연금·유기연금·종신연금 등이 있으며, 급부시에 자기부담금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잡소득으로 과세하며, 연금급부액에서 자기각출분은 공제되는데 이때의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는 【공제액 = 연금연액 × (기납입보험료 총액/연금지급 총액)】 이다. 또한 과세대상액에 대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액 = 연금연액 × (1 - 총납입보험료/연금지급 총액) 또는 연금예상액 + 연금개시 후 당해연도 잉여금】 이다. 개인연금보험 및 「생보형」 및 「보험형」 연금을 본인이 수취하면 소득세·주민세가 과세된다. 그 연금기준은 상기한 것과 같다.

라. 개인연금 과세체계의 국가간 비교

미국과 영국이 개인연금에 상대적으로 큰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근로자나 자영자의 각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급부에 대해 과세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단 소득공제에도 확정급부형 연금인지 확정각출형 연금인가에 따라 상이하며 미국의 경우 확정각출형 연금이 훨씬 더 큰 소득공제를 허용받고 있다. 급부에 대한 과세시 각출금 원금상당액을 제외하고 통상의 소득과세를 적용받으며(영국 제외), 정해진 연령보다 조기에 수급하면 추징세가 적용된다(미국 Keogh Plan, IRA). 독일의 경우 종신연금은 각출금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과세하지만 확정연금은 이 같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전액과세 된다. 일시금 수령시 일시소득

16) 소득세법 제76조 ①, ②, 소득세 기본통칙 76-7, 지방세법 제34조, 제34-2조.

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거나(일본) 일정 한도내에서 비과세하거나(영국) 통상의 소득과세를 적용(미국, 독일)하고 있다.

<표Ⅲ-3>은 개인연금과 관련한 4개국의 과세체계를 요약하고 있다.¹⁷⁾

<표Ⅲ-3> 개인연금 관련 세제

구분	근로자(자영자) 각출보험료	적립에 따른 운용 수익	금 부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Keogh Plan과 IRA의 확정 각출형과 확정급부형별로 상이한 소득공제 허용 -Keogh Plan은 소득의 25%와 \$3만중 작은쪽 한도 소득공제 -IRA는 \$2천와 소득 중 작은쪽 한도 각출 및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금수급 시점까지 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 -각출금 원금 상당액 공제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개인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에 따라 상이 -최대 5만엔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사의 소득 계산에 포함시켜 법인세 과세 -우편연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 -원금 상당액 공제하고 나머지를 잡소득 간주 -일시금은 일시소득 간주 -유족일시금과 유족연금은 적격퇴직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속세 과세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연소득의 17.5% 한도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는 연령별로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금수급 시점까지 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 -원금 상당액 공제 없음 -일시불 수령 가능 -일시금은 적립금의 25%나 15만 한도내에서 비과세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6340 DM까지 전액공제 -6340 DM초과분은 50% 공 제(공제한도는 7510 D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금수급 시점까지 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 -확정연금은 전액과세 -종신연금은 원금 상당액 공제후 나머지 과세

17) A. Dilnot, Private Pension and Public Policy, OECD, 1992.

IV.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크게 <표IV-1>와 같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며, 공적 연금은 다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근로기준법상의 퇴직보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IV-1> 연금소득 과세구분

구 분		과 세	비 과 세
공적 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기 타		-	산재급여, 실업급여

1. 우리나라 사적연금소득 과세체계

가. 과세대상

2000.12.29과 2005.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③내지⑤)은 ③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연금(이하 ③내지⑤를 '사적 연금'이라 함)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만 연금소득에 해당되고 연금법에 의해 지급한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¹⁸⁾

나. 과세되는 사적연금소득 산출기준

18)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1)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저축에 의한 개인연금 수령액 중 기초소득 공제받은 금액(연간 300만원한도¹⁹⁾과 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²⁰⁾ 폐지된 개인연금저축제도에 의한 기존가입자는 계약만료시까지 연간 붙입액의 40%(72만원한도)를 소득공제하고 연금 수령시 소득세 비과세한다.²¹⁾

연금저축가입자가 붙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붙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20%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²²⁾ 연금저축가입자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2%의 해지가산세를 부과한다.²³⁾

(2)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²⁴⁾ 퇴직연금 기여금은 개인연금(즉, 연금저축) 기여금과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한다.²⁵⁾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는 비과세한 후 근로자가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수령하는 단계에서 과세한다. 퇴직연금은 수급시 과세대상소득의 5%가 원천징수되며 이후 종합과세된다. 다만 퇴직연금의 과세대상 소득은 연금수취액에서 기여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금액을 제외한 소득이다.

다. 연금소득금액

19) 2005.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연간 한도액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20)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2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4항.

2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제5항.

24) 소득세법 부칙 제1 조, 6조, 제19조.

25) 소득세법 제51 의3 ① 3호.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²⁶⁾

$$\text{연금소득금액} = \text{총연금액} - \text{연금소득공제액}$$

(1) 총연금액

‘총연금액’이란 연금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 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아래<표Ⅳ-2>와 같이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²⁷⁾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²⁸⁾

연금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고 급여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와 유사한 소득공제를 인정하였다.

<표Ⅳ-2>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비 고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공제한도 900만원
350만원 ~ 700만원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 40/100	
700만원 ~ 1,400만원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10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	

라. 분리과세 연금소득

연금소득으로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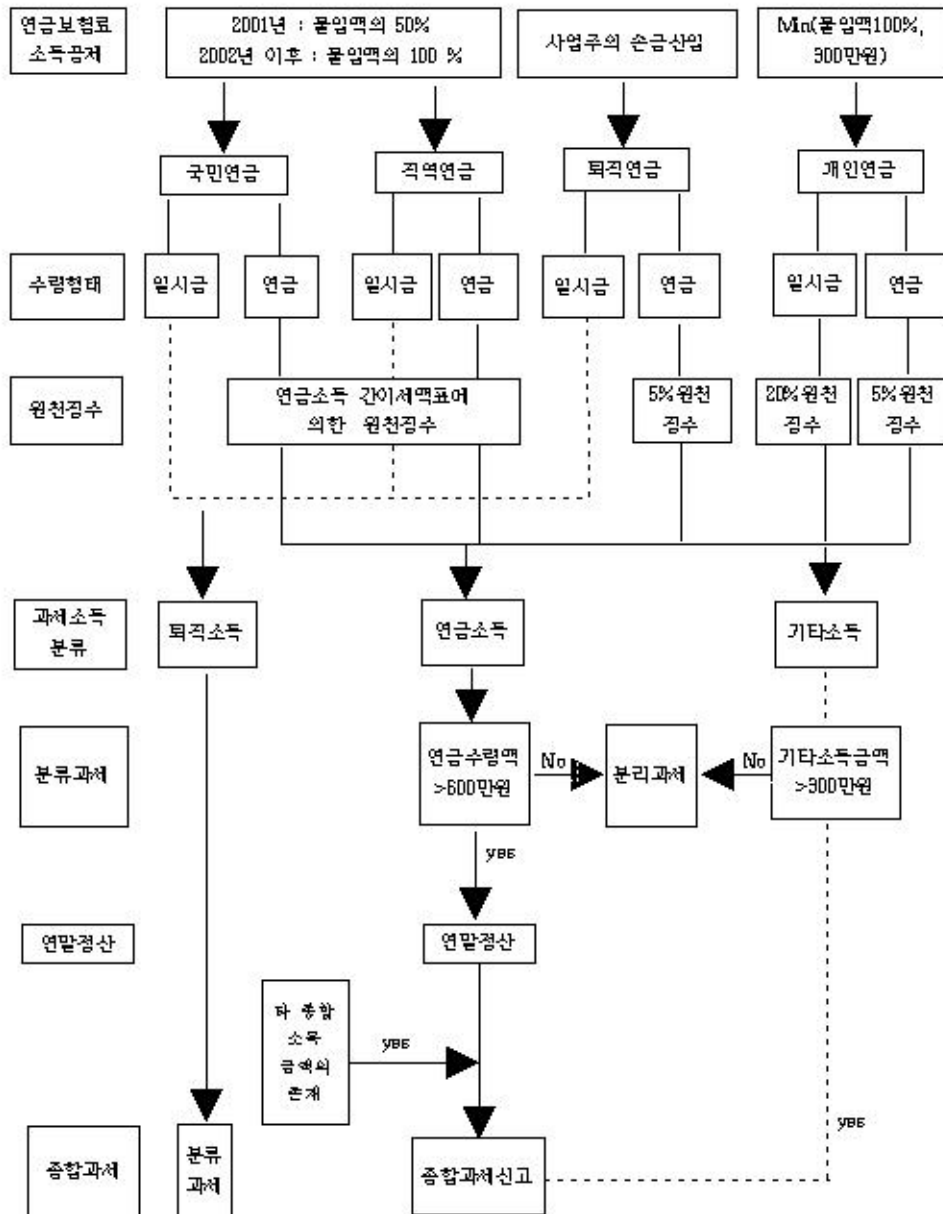
26)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

27) 2005.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간 한도액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28) 소득세법 제47조의2.

29)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그림 IV-1> 현행 연금관련 세제체계의 흐름도³⁰⁾



30) 최경식,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과 향후 과제, 사회과학논집 제6호(2002), p. 344를 수정 인용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

첫째, 새로운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너무 무거운 세부담을 들 수 있다.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는 종전의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에 비해 추정세부담이 무척 커서 자칫 계약해지자는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아갈 확률이 높아졌다. 즉 5년내 중도해지시는 이미 공제받았던 소득공제액과 자산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로 20% 원천징수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며 동시에 그 동안의 저축불입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5년 이후 해지시도 기타소득세로 20% 원천징수 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그 결과 계약해지자의 세부담이 상당히 커서 재산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원금손실은 초래하지 않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간의 소득공제 불균형문제가 야기된 점을 들 수 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개인연금저축은 향후 연금불입기간동안 계속해서 연간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도 72만원)하는 반면에,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 전액(한도 240만원, 2006년부터는 연간 한도액이 300만원으로 상향)을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양자간에 불균형문제가 야기되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셋째, 퇴직연금 세제는 퇴직연금의 보급을 확대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세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현행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개인연금에 적용하던 우대조치를 약간 확대한 수준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외적립금의 손금인정 한도가 비계속기준으로 제한되어 제도 도입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기준에 의해 사외적립금을 찰는 경우 비용증가분 만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퇴직연금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종합소득과세에 적용하는 연금소득공제의 규모가 크고 또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구별하지 않고 합산과세함으로써 기여·운용·수급의 어느 단계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상당수준 발생한다. 특히 후세대 등 다른 사람이 번 소득이 적지 않은 구성비를 점하는 공적연금소득은, 백퍼센트 자신이 번 소득을 적립·운용한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과세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퇴직연금 도입으로 연금소득공제 한도액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공제한도액 인상은 단기적으로 공적연금만을 지닌 이들을 더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개선방안

첫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가입이 의무화된 경우는 세제혜택이 적은 반면 대부분의 개인연금과 같이 연금가입이 자발적인 경우는 소득공제의 형태로 세제혜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급부단계에서는 통상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퇴직금과 같은 일시불 형태의 사적연금의 경우는 이를 연금화하는 형식으로 재가입시에는 일시불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가입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에 비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세제지원체계가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 한 가지는 저소득·고소득층에 관계없이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연금수급시 과세된다고 하지만 붙임시보다 수급시에 누진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의 경우 상당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세제지원이 없어도 노후소득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소득계층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세제지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규모별 연금소득공제의 차등적용과 더불어 연령별 연금소득공제의 차등적용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의 경우 노후보장을 위한 저축의 차원에서 납부시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급부시 비과세인 EET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세제혜택의 폭을 축소·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진국의 경우도 개인연금 납부시와 급부시 모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 상호간의 세제혜택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세부담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퇴직연금을 선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세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의 과표구간,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고려가능하다. 또 퇴직금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 퇴직소득에 적용하는 급여비례공제율과 근무연속별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 급여비례공제나 근무연속별공제 중 하나를 폐지하고 나머지 하나의 공제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크게 약화시켜 퇴직연금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금수급시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수준이 높거나 근무연수가 길어 퇴직연금액이 큰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부담이 연금 수령시보다 크게 낮아진다.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일시금 아닌 연금 형태의 수급을 유도할 필요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현

행 세제는 일정한 수준의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시금 선택시의 세부담이 연금 선택시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것은 시정할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은퇴기에 접어든 경제적 약자가 연금 아닌 일시금을 택해 노후소득 보장이 불안해진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시금 선택시의 세부담을 지금보다 높이는 등 세제유인을 제도에 도입하고 필요시에는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후소득보장수단인 연금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이는 향후 노후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눌 수 있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수단 중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소득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사적연금세제의 과세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미국·영국·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의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사적연금소득 과세체계가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연금저축의 종도해지시 너무 무거운 세부담,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불균형, 퇴직연금소득의 미정착, 공적연금과의 과세불공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퇴직금과 같은 일시불 형태의 사적연금의 경우 이를 연금화하는 형식으로 재가입할 시에는 일시불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가입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 연금소득규모별·연령별 연금소득공제의 차등적용 필요, 사적연금 상호간의 공평한 세제혜택,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세부담을 조정, 연금수급시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 과세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소득에만 국한한 점은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의 사적연금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사적연금소득과 여타연금소득의 조세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공·사연금제도의 적절한 역할분담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광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한국증권경제연구원, 1997.
- 고승희, 일본의 적격퇴직연금제도와 세무, 한국경상논집 제24권, 2002.
- 나성린·문춘걸, 선진국의 연금과세제도 비교분석, 경제연구 제21권, 2000.
- 김민호, 연금소득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IRC72를 중심으로, 한국정책41, 1997.
- 김수성, 연금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진수,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월간조세 10호, 2006.
- 김원식,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보험개발원 연구 제16호, 2005.
- 방하남,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 박일력, 기업연금 과세방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양성문, 주요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보험개발원, Insurance, Business Report 제6호, 1998.
- 이상윤, 미국의 연금과세제도 I·II, 월간조세, 2001.
- 이준성,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국세월보 통권 제439호, 2003.
- 이해영, 일본의 퇴직금제도 : 역사적 변모과정과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1997.
- 임병인·김세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보험개발원 연구보고서2004-4, 2004.
- 전영준·한도숙,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0.
- 전춘옥,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세우대와 조세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2002.
- 전춘옥외 2인, 고용관행의 변화에 따른 퇴직급여 회계와 세무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8.
- 전춘옥·이효익·이석영, 기업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1999.
- 정영철·정영욱, OECD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Insurance Business Report 통권 제2호, 1997.
- 정요섭,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의 분석과 평가, 리스크관리연구 제12권, 1999.
- 정요섭, 신·구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효과 비교, 리스크관리연구 제12권, 2001.
- 조범상, 공적 연금소득의 과세 적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5.
- 최경식,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과 향후 과세, 사회과학논집 제6호, 2002.
- 한도숙 외,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한국조세연구원, 1995.

久保知行, 適格給付制度の構造改革, 東洋経済新報社, 1999.

多賀谷充, 適格給付會計基準, 稅務研究會出版局, 2000.

A. Dilnot, Private Pension and Public Policy, OECD, 1992.

Andrews, E.S, Private Pensions in the United States, OECD, 1993.

McGil, Dan M, and Donald S. Grubbs, Jr, Fundamentals for Private Pension 6th Edition, 1998.

Rabel, William H, and Ernest L. Martin,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IRAs) and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SEPS), The Handbook of Employee Benefits, 1984.

Stout, Gary R, and Robert L. Barker, Roth IRA Planning, Journal of Accountancy, 1998.

Switzer, Ralph V, Jr and Tracey C. Webb, New Roth IRA Provides Tax Planning Opportunities, Tax notes, 1998.